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45
------	------

발의일자 : 2023. 11. 15.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정순기, 도병두의원

1.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국내 혈액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유공패(장)을 받은 헌혈구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급 내용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 나.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표창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혈액관리법」 제4조, 제4조의8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2) 입법예고: 2023. 11. 16. ~ 2023. 11.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헌혈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패(장)을 받은 사람에게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은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표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05. 1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25호, 2017. 05.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장기기증 등록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등을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보건분소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 및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기증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분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기증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1항제2호의 해당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 홍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현행 및 장기 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현행 및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925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중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4조의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